

신탁계약서

유리 MKF웰스토탈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기업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종업자를 말한다.
3.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4. “주식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종류형”이라 함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9. “협회”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유리 MKF웰스토탈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Class A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2. Class C 수익증권 : 제한없음
3. Class C1 수익증권 : 납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4. Class C2 수익증권 : 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5. Class A-e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 가입자 <신설 2009. 11. 18>
6. Class C-e 수익증권 : 온라인 가입자 <신설 2009. 11. 18>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
-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월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에 따른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 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C 수익증권
3. Class C1 수익증권
4. Class C2 수익증권
5. Class A-e 수익증권 <신설 2009. 11. 18>
6. Class C-e 수익증권 <신설 2009. 11. 18>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를 한 때에 법 제309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 라 한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

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 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이하 “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 · 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 · 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9조제13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
5. 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금리스왑거래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수익증권 등”이라 한다)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
9. 환매조건부채권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차입
11.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12.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13.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18조(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어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이하로 한다.
7.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8.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과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
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
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
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
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4.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
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7.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동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9조제2호 본문 및 제4호, 제5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269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법시행령 제26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④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5.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등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 4항에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3호에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26조(환매업무)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타 법시행령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예탁결

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⑦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7조(환매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3호에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8조(환매연기) ① 제26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제2항에 따라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자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 나. 법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법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④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 제29조(집합투자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 ·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 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까지**로 한다.

제32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7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⑥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법 제18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

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9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2. Class C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3. Class C1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Class C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5. Class A-e 수익증권 <신설 2009. 11. 18>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6. Class C-e 수익증권 <신설 2009. 11. 18>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제40조(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1 이내 <개정 2009. 11. 18>

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7 이내 <신설 2009. 11. 18>

③ 제2항제2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제41조(환매수수료) ①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2.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1항 단서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 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38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 제1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체 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이하 이 항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32조 제1항의 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⑩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제51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7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05월 06일)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8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07월 09일)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8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10월 24일)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5월 3일)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6월 3일)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11월 18일)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